

2021년도 제13회 전라북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1년도 제13회 전라북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0일
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인원	계약 기간	담당업무	근무예정 부서
국제교류 (신북방 및 일본) 전문요원	지방행정 주 사 보 (7급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신북방 및 일본 국제교류 관련 업무 전담◦ 영어권 및 일본어권 통·번역◦ 일본 자매·우호도시 등과 인적물적 교류협력 전담◦ 신북방 및 일본 지역 자료수집, D/B관리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◦ 전라북도 예방 외빈 통역 및 의전◦ 기타 신북방 및 일본 국제교류 자문 및 협조◦ 해외호남향우회 등 재외도민 협력 지원	국 제 협력과

2 임용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
- 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)
- 라.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 임용자격 기준

- 가. 공통요건([기준일](#) : 면접시행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>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<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주소지·성별·연령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나.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일)

- ▶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 (예정직급)	임용자격 기준
국제교류 (신북방 및 일본) 전문요원 (지방행정주사보) (7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<p><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국제교류, 국제기구, 국제개발협력 분야 등 실무경력 <p>※ 영어권 통·번역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수준의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자</p>

※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*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17조제5항

4 보수수준

가. 연봉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연봉상한액	연봉하한액
일반임기제 7급	62,675	44,514
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 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5 시험방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·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대상자 :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
- 면접내용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면접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합격자 결정 :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6

시험일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11. 1.(월) ~ 11. 3.(수), 18:00까지 /3일간
- 접수장소 : 전라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2층)
- 접수방법 : **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** ↪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공무원채용팀으로 연락바랍
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에만 접수가능(접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▷ 주소 : (우54968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2층)
- ▷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(☎063-280-4219)
- ▷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'**통상환증서**'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(현금X)

나. 1차시험(서류전형) : 2021. 11. 8.(월)

☞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문(일정 안내 등) : 11. 9.(화)

다. 2차시험(면접시험) : 2021년 11월중 실시

라.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1년 11월중 도 홈페이지(시험/임용) 공고

7

응시자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2호)

- 응시수수료 : 전라북도 수입증지 7천원(6·7급)

※ 전라북도청 1층 민원실 구입 *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

나. 이력서 1부(별지서식 3호)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

- 다.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4호)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(별도서식 없음)
-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
- 라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사본)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마.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- 증명서에는 **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**
 - ※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 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※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**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**
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(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)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
바.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(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)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 | ※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|
| ②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 발급) 1부.
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| |

사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제5호)

아. 주민등록초본 1부(남여 모두 제출 : 병적사항 포함-남자에 한함)

자.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차.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카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서식 6호)

☞ 유의사항 :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**한글 번역본(공증필)** 첨부

8 기타사항

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전라북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북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모든 증명서는 원본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)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,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)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(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- 사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북도 홈페이지 시험 임용(임기제/개방형직위임용시험)란에 공고합니다.
- 아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시험관련 문의 :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☎063-280-4219)
 - 업무관련 문의

임용분야(직급)	담당부서	연락처
국제교류 전문요원(지방행정주사보)	국제협력과	☎ 063-280-2082

참 고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급	선발예정 인원
국제교류(신북방 및 일본) 전문요원	지방행정7급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 기관명	근무예정 부서
전라북도	국제협력과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북방 및 일본 국제교류 관련 업무 전담 ◦ 영어권 및 일본어권 통·번역 ◦ 일본 자매·우호도시 등과 인적·물적 교류협력 전담 ◦ 신북방 및 일본 지역 자료수집, D/B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◦ 전라북도 예방 외빈 통역 및 의전 ◦ 기타 신북방 및 일본 국제교류 자문 및 협조 ◦ 해외호남향우회 등 재외도민협력 지원
------	---

필요역량	<input type="radio"/> (공통 역량)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 마인드 <input type="radio"/> (직급별 역량) 과업 이해력, 관계 구축력, 의사소통 능력
------	--

필요지식	<input type="radio"/>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도 <input type="radio"/> 신북방 및 일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식 <input type="radio"/> 도정 및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한 신북방 및 일본어권 통·번역 능력
------	---
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 : 국제교류(신북방 및 일본) 전문요원
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> - 국제교류, 국제기구, 국제개발협력 분야 등 실무경력 ※ 영어권 통번역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수준의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자
우대요건	<input type="radio"/> 없음